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개정 2006. 3. 24)

개 정 전	개 정 후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b></p> <p>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감독자 ----- .</p> <p>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 -----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 .</p> <p>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 -----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 .</p> <p>③ ----- 제5항 및 제15조의2의 ----- .</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b></p> <p>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lt;삭제&gt;</p> <p>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 ----- ----- 관리감독자에 ----- .</p> <p>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3[과징금] ⑤ 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신설&gt;</p> <p>제16조[보건관리자등] ① ----- ----- 관리감독자에 ----- .</p> <p>③ ----- 제5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 .</p>

개 정 전	개 정 후
제16조의2[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 -----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 <u>사업주·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u> -----;	제16조의2[안전관리자등의 지도·조언] ----- ----- 관리감독자에게 ----- <u>사업주·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는</u> -----;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등을 ----- <u>다만, 상시 1,00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 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 있 어서는 당해 노사협의회를 이 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 원회로 본다.</u>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의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 <u>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u> -----, <단서삭제>
<b>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b>	<b>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b>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 <u>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u>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1. ----- <u>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u> ⑦ 제1항제1호의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여 피용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④ ----- <u>전문기관의</u> -----;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④ ----- <u>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u>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 기타 -----	⑤ <u>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u> ----- 그 밖에 -----;
⑥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 <u>“전문기관”으로</u> -----	⑥ 제15조의2의 및 제15조의3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에 ----- <u>“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u> -----;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	제32조[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 3. <u>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u> -----
4. ----- <u>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u> -----	4. ----- <u>사업주 및 관리책임자</u> -----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③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 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방호장치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③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 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 험을 받은 방호장치 <신설> 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개 정 전	개 정 후
<p>⑨ 제3항의 -----</p> <p>제35호[보호구의 검정] ①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보호구</p> <p>⑦ 제1항의 -----</p> <p>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 ② ----- 노동부장관에게 -----</p> <p>제36조[자체검사]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37조[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3. 그 밖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방호장치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lt;신설&gt;</p> <p>⑩ 제4항의 -----</p> <p>제35호[보호구의 검정] ①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보호구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보호구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방법 및 유효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호구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lt;신설&gt;</p> <p>⑧ 제2항의 -----</p> <p>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 설계·시공하는 자에 ----- ② -----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에게. -----</p> <p>제36조[자체검사]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주기 및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개 정 전	개 정 후
<p>제38조[제조등의 허가] ① 제37조 각호의 1의 -----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p> <p>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p> <p>②~⑥</p> <p>⑦</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b></p> <p>제42조[작업환경측정등]</p> <p>⑦ ----- <u>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을 평가</u> -----</p> <p>⑧</p> <p>제43조[건강진단] ① ----- 근로자에 대한 -----</p> <p>③ -----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p>	<p>제38조[제조등의 허가] ① 제37조 각호의 1의 -----                      6. &lt;삭제&gt;</p> <p>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lt;신설&gt;</p> <p>③~⑦</p> <p>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lt;신설&gt;</p> <p>⑨</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b></p> <p>제42조[작업환경측정등]</p> <p>⑦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lt;신설&gt;</p> <p>⑧ -----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 ----- 이 경우 평가 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⑨</p> <p>제43조[건강진단] ①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p> <p>③ ----- 건강진단기관의 -----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p>



개 정 전	개 정 후
<p>⑥ ----- <u>건강진단기관등으로</u> ----- .</p> <p>⑧ ----- <u>항목 및 비용,</u> ----- .</p> <p>⑨ ----- <u>제1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건강진단기관에</u> ----- .</p>	<p>⑥ ----- <u>건강진단기관으로</u> ----- .</p> <p>⑧ --- <u>항목 · 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 관리,</u> ----- .</p> <p>⑨ <u>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 분석능력을 평가하 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 ·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평가 및 지도 · 교육의 방법 ·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lt;신설&gt;</u></p> <p>⑩ ----- <u>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u> ----- .</p>
<p><b>제6장 감독과 명령</b></p>	<p><b>제6장 감독과 명령</b></p>
<p>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 ----- <u>당해사업장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도사의 사무소에</u> -----</p>	<p>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 ----- 다음 각 호의 장소에 -----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 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li> <li>2. 제15조제4항 · 제16조제3항 · 제30조제4항 · 제31조제4 항 · 제36조제2항 · 제42조제4항 · 제43조제1항 및 제49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li> <li>3. 제52조의4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사무소</li> </ol>
<p><b>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b></p>	<p><b>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b></p>
<p>제63조[비밀유지] ----- <u>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u> ----- <u>역학조사를</u> -----</p>	<p>제63조[비밀유지] -----,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 를 제공받은 자, ----- 제43조의2의 규정 에 따른 역학조사를 -----</p>
<p>제63조[비밀유지] -----, <u>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u> ----- -----, <u>역학조사를</u> -----</p>	<p>제63조[비밀유지] -----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 를 제공받은 자, -----, 제43조의2의 규 정에 따른 역학조사를 -----</p>
<p>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 <u>각호의 1에</u> ----- .</p> <p>1. <u>제15조의2 · 제16조 · 제30조 · 제31조 · 제36조 · 제42 조 · 제43조 ·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u></p>	<p>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1. <u>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 제30조제6항 · 제31조제6 항 · 제36조제5항 · 제42조제9항 · 제43조제10항 · 제47 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취소</u> 1의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취소 2의2.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p>

개 정 전	개 정 후
<p>② 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4조의5·제35조의2·제36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7조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u>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u>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제30조제6항·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제42조제9항·제43조제10항·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4항·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u>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p> <p>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1항제4호의2·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li> <li>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li> <li>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평가</li> <li>4.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li> <li>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정</li> <li>6.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li> <li>7.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li> <li>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의 검정</li> <li>9.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li> <li>10. 제4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li> <li>11.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li> <li>12.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능력 평가 및 지도·교육에 관한 업무</li> <li>13.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li> <li>14.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li> <li>15.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심사 및 확인</li> <li>16.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심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li> <li>17.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에 관한 업무</li> </ol>

